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7. 7. 1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7월 7일,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7년 7월 10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4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7년 7월 1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토목과장 박 종 국

가. 제안이유

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제설·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관리 범위 및 책임 범위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, 제설·제빙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,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건축물 내에 거주·비거주 경우와 공동 주택, 공공시설,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제설·제빙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의 책임순위 명시 (안 제3조)
-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 범위 명시 (안 제4조)
-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 시기 명시 (안 제5조)

-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방법 명시 (안 제6조)
- 제설·제빙 작업의 안전유의 사항 명시 (안 제7조)
- 제설·제빙 시 안전 위험 예상 시에 작업의 중지 명시(안 제8조)
- 제설·제빙 도구 비치 명시 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(송인수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에 따라 제설·제빙에 대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관리 및 책임 범위 등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, 제설·제빙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,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고자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,

○ 조례의 주요 내용은

- 안 제3조는 건축물 내에 거주·비거주 경우와 공동 주택, 공공시설,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제설·제빙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의 책임 우선 순위를 정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는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 시기를 명시화 하였으며,
- 안 제6조는 보도·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, 시설물 지붕에 대한 제설·제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제설·제빙 작업 시 안전유의 사항을 명시화하였고,
- 안 제8조는 제설·제빙 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단 및 안전조치를 명시화하였으며,
- 안 제9조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·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·관리토록 하였음.

-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27조(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)의 규정에 의해,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관리 범위와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,
- 이를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여 제설·제빙의 실효성 확보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
- 다만, 상위법령에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, 본 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